

#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(안)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안연월일 : 2005년 3월 일  
제안자 : 임경만의원 외 10인

## 1. 제안이유

- 도로, 하수, 가로등, 어린이놀이터, 경로당 등은 공공시설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하나,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로서 그동안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없어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부담 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음.
-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전문개정시 법 제43조8항에서 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지원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적용범위(안 제2조)

-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### 나. 종합계획수립(안 제4조)

- 구미시장은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

### 다. 지원범위 및 대상(안 제5조)

-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(시부담70%, 자부담30%)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(다만,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.)

- 시장은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, 주택법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규모 이하가 3분의2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
- 지원대상(공동주택의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로서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에 한함)
  -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
  - 상·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
  - 수목의 전지
  -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
  - 체육시설의 보수
  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
- 시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

#### 라.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(안 제6조)

-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[별지 제1호서식]의 「공동주택 공동시설지원 신청서」를 제출
- 시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.

#### 마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7조)

- 위원회 명칭 : 구미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
- 위원회의 기능
  - 당해연도 공동주택보조사업 계획
  - 보조사업신청서의 적정성 여부
  - 보조사업비의 지원여부 및 규모
  -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#### 바. 위원회의 구성(안 제8조)

- 위원회 구성 :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이내
- 위원장은 부시장인,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,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.
  - 집행기관의 공무원 10명(당연직)

- 기획담당관, 새마을·사회복지·건설·건축·공원녹지·수도·하수과장
-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
- 토목전문가 및 건축전문가 또는 주택관리사 각 1명
- 위원의 임기 : 2년

#### **사.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(안 제9조)**

-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시 교부금의 중지 또는 반환요구.
  - 보조금의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
  -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
  -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
 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
  -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

#### **자. 정산보고(안 제10조)**

- 사업종료 후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정산서 제출

#### **차. 준용규정(안 제11조)**

-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준용

### **3. 참고사항**

- 주택법 제2조 및 제43조
-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
-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

## 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공동 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(이하 "공동주택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.

**제3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관리주체"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.
2. "공동주택 단지"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주택단지를 말한다.

**제4조(종합계획 수립)** ①구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범위 및 대상)** ①시장은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(시부담70%, 자부담30%)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, 주택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3분의2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로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에 한한다.

1.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
2. 상·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(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에 매설된 상·하수도 시설)

3. 수목의 전지

4.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

5. 체육시설의 보수

6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

④시장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신청 및 교부결정)**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**【별지 제1호서식】**의 **【공동주택 공동시설지원 신청서】**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

2. 보조금 사업의 목적

3. 보조금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

4.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

5.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설계 내역서

6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(이하 “대표회의”라 한다)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.

⑤시장은 보조금 지원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** ①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당해연도 공동주택보조사업 계획
2. 보조사업신청서의 적정성 여부
3. 보조사업비의 지원여부 및 규모
4.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

**제8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기획담당관, 새마을·사회복지·건설·건축·공원녹지·수도·하수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1. 집행기관의 공무원 10명(당연직)
2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
3. 토목전문가 및 건축전문가 또는 주택관리사 각 1명
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의원의 경우 임기종료 또는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각중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)** 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행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보조금의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
2.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
3.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
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
5.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

**제10조(정산보고)**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 공동주택 공동시설지원 신청서

|     |                |  |     |  |
|-----|----------------|--|-----|--|
| 신청자 | 공동주택명          |  | 동 수 |  |
|     | 주 소            |  | 세대수 |  |
|     | 입주자대표회의<br>의결일 |  | 준공일 |  |

신 청 내 용

| 구 분             | 개 요 | 소요예산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|
| 계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
| 도로분야<br>(가로등포함) |     |      |     |
| 상·하수분야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
| 녹지분야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
| 기 타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|

구미시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○○○○업주자 대표 (인)

구미시장 귀하

구비서류 :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(사본), 장기수선사업계획서, 공사비산출도서  
장기수선 충당금(사본)

접 수 처 : 구미시청 건축과